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847호

나. 발 의 자 : 임규호 의원(찬성자 11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0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3. 주요내용

-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시장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제정안의 개요

- 동 제정안은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임.

나. 제정의 필요성

- 동 제정안은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밀접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- 서울시는 입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과 관련한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조례」를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」을 제정(2021.3.5.)하였음.
 - 이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, 장애인체육 등을 육성·지원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조례 성격을 부여한 것임.
- 현행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체육 진흥 조례」(제16조)에 따르면 ‘생활체육지도자 육성과 지원’ 사업, ‘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’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.

<서울특별시 체육 진흥 조례 관련 조문>
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<개정 2022.3.10, 2022.4.28, 2023.5.22>

1.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

1의2.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

2.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

- 따라서 기존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경제와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.
- 다만 「스포츠클럽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하는 의무조항에 따라 경기도, 경상남도, 충청남·북도, 부산광역시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 운용 중임.

다. 조문별 검토

1) 용어 정의 등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)

- 제정안은 생활체육의 진흥과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
2)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사업(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)

-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▶공공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위탁 사

업 ▶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사업 ▶스포츠클럽의 설립과 등록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-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▶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▶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▶우수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「생활체육진흥법」과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시책 마련과 행정·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 정책전 판단임.

3)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(안 제7조)

- 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.

생활체육지도자 운영현황

- 지도자 정원 : 343명 (일반지도자 178명, 어르신지도자 159명, 유소년 지도자 6명)
 - 자치구체육회 소속으로 10~18명씩 배치되어 지역 생활체육지도 활동
- 총사업비 : 12,783백만원 ※ '22년부터 자치구비 25% 분담
 - 일반회계 : 국비50%(5,110백만원)+시비25%(2,563백만원)+구비25%(2,562백만원)
 - 체육진흥기금 : 시비 100% (2,548백만원)
- 지도자 인건비 : 1인 보수액 2,738천원/월 (①기본급여+②수당)
 - ①기본급여 : 국·시·구비 매칭 (기본급 2,142,200원 + 법정부담금 401,800원)
 - ②수 당 : 전액 시비 (최대 596,000원 + 법정부담금 107천원)

휴일근무수당 (‘12년 신설)	현장지도 활동수당 (‘13년 신설)	교통비 (‘16년 신설)	급식비 (‘18년 신설)
1인 269천원/월 (평균 16시간) ※ 1인당 17,020원	10년이상 10만원, 7년이상 7만원, 5년이상 5만원, 3년이상 3만원 ※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	100천원/월	130천원/월

- 생활체육지도자 1명당 평균 보수는 월 2,738천원으로, 문체부와 시·자치구가 일정 비율(국고 50, 시비 25, 구비 25)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 매년 단일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어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기본급이 동일한 실정임.
-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(호봉제) 도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에서 책정한 기본급을 기준 호봉 급여로 하고, 매년 호봉 승급 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준표에 따라 근속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음.
-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운영 성격 상 임금은 매년 문체부장관이 지정·통보하고 17개 시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관리도 문체부에서 수행 중이므로 시 차원에 임금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으며 서울시 권한 밖으로 볼 수 있음.

따라서 안 제7조4항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의 수립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)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(안 제8조)

- 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 시·구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 생활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반적이고 주기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관리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구체적·심층적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
1) 산출내역 : ((인건비+교통비+급식비) ÷ 209시간) × 1.5배 = 17,020원(17,016.74)

5) 지원 및 위탁(안 9조부터 안 제10조)

-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,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인건비의 경우 중앙정부(문화체육관광부)가 정원을 관리하고, 정부·시·자치구가 일정비율로 제한적 지원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.
-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세분화하지는 않고 있음.
- 다만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를 두고 또 다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복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붙임 1**집행부 검토의견**의안번호
0847**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**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임규호 의원 (교통위원회)	2023.5.30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<p><제안이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진흥과 서울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 <p><주요요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스포츠 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-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- 시장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		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.5.30. 임규호 의원 발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찬성) 김성준, 김지향, 남창진 의원 등 11명 				
부 서 검 토 의 견	원안가결() / 수정가결 (○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신설(수정가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(제외) 				
대응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매년 문체부장관이 지정·통보하며, 17개 시·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관리도 문체부에서 수행 중임 ○ 제7조 4항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외하는 것으로 교통위원회 송경희 정책지원담당관과 협의 완료 				
담당부서	체육진흥과	팀장	성현옥(☎2133-2732)	담당	양윤미(☎2133-2733)